#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18호

제출년월일 2024. 2. . 제 출 자 김포시장

# 1. 제안이유

○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나.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에 사회복지분야로 확대 추가함 (안 제1조 및 제2조)
- 다. 센터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에 사회복지분야로 확대 추가함 (안 제4조 및 제5조)
- 라. 그 밖에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다. 예산조치 : 2024년도 본예산 반영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1. 26. ~ 2. 5. (1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나) 경 기 도 : 식품안전과

#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김포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21조에 따라·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제21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어린이에게"를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 제3조"로 하고, 같은 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어린이"를 "어린이와취약계층"으로 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어린이·사회 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제4호 중 "어린이"를 "어린이·취약계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급식소"를 "시장이 급식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검사·감사를 요청"을 "수탁기관에 검사·감사를 요구"로 한다.

제10조 중 "「김포시 포상 조례」"를 "「김포시 포상조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논관 실·과·소	식품위생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식품위생과장 이 기 모		
	팀 장 직위·성명	음식문화팀장 박 경 철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보건주사보 김 정 민(☎2238)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김포시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 및 운영 조례 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 제1조(목적) ---------- 제21조, 「노인・장애 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김 하여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 원센터 ---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 등 취약계층에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제2조(정의)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중등교육 1. ------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 -----아동복지법」 제3조-----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을 말하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 〈신 설〉 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2. "급식소" 란 김포시 소재 시설 3. -----등에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 | 어린이와 취약계층-----공하는 곳을 말한다.

3. · 4.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어린이급</u> <u>식관리지원센터</u>의 설립 및 운영 지 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 설〉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 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 3. (생략)
- 4. <u>어린이</u>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 지도
- 5. · 6. (생략)
- 7. 그 밖에 <u>급식소</u>의 위생관리 및 영 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u>4</u> . · <u>5</u> .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어린이ㆍ</u>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제4조( <u>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u>						
<u>센터</u> 설치 및 운영 등)						
<u>어린이·사회복지급식</u>						
관리지원센터						
<del></del> ,						
1. ~ 6. (현행과 같음)						
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						
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						
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센터의 기능)						
<u>.</u>						
1. ~ 3. (현행과 같음)						
4. <u>어린이·취약계층</u>						
5. · 6. (현행과 같음)						
7 <u>시장이 급식소</u>						

제7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u>범위 내</u>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공 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 회 이상 지도 · 점검하게 할 수 있으 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u>검사 · 감사를</u> <u>요청</u>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생략)

제10조(포상) 시장은 센터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u>「김포시 포상 조례」</u>에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지원) ①
<u>범위</u>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도 감독 등) ①
<u>수탁기관에 검사·감사를</u>
요구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포상)
「김포시 포상조례」
<u>.</u>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2020. 12. 29.〉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19. 4. 30.〉
  -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
  -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 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 · 영양관리 지도
  -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 · 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0.2.14.>
  -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3. 경제적 효율성
  -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 ③ 삭제 <2020.2.14.>
- ③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0.2.14.>]
-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
  -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4.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5. 상급기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지정된 경우
  - ③ 재계약하는 사무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2.14.]

####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김포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어린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2. "급식소" 란 김포시 소재 시설 등에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 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지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시설
-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급식소 위생·안전·영양 관리 지원계획 수립·추진
  - 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 3. 급식소에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자료 등 보급
  - 4.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
  - 5.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 6. 우수 농 · 축 · 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 7. 그 밖에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 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포상) 시장은 센터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나. 비용 발생 요인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
  - 해당 없음

#### 2. 비용추계

-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 없음
-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1,255,000	1,355,000	1,366,874	1,379,104	1,391,701	6,747,679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운영비	345,795	395 <i>,</i> 795	407,669	419,899	432,496	2,001,654
	인건비	876,155	926,155	926,155	926,155	926,155	4,580,775
	여비	16,500	16,500	16,500	16,500	16,500	82,500
	직무수행경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자산취득비	1,550	1,550	1,550	1,550	1,550	<i>7,</i> 750

-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예산과 협의완료
-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 4. 작성자 : 경제국 식품위생과 과장 이기모 팀장 박경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	세 입	721,625	779,125	785,953	792,985	800,228	3,879,916
국비		627,500	677,500	683,437	689,552	695,851	3,373,840
도비		94,125	101,625	102,516	103,433	104,378	506,077
,	세 출	1,255,000	1,355,000	1,366,874	1,379,104	1,391,701	6,747,679
국비		627,500	677,500	683,437	689,552	695,851	3,373,840
도비		94,125	101,625	102,516	103,433	104,378	506,077
시비		533,375	575,875	580,921	586,119	591,473	2,867,763
7	재원 조달	627,500	677,500	683,437	689,552	695,851	3,373,840
	소 계	627,500	677,500	683,437	689,552	695,851	3,373,840
의존	보조금	627,500	677,500	683,437	689,552	695,851	3,373,840
재원	지방교부세						
	소 계						
자체	지방세수입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	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